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15년이 흘렀다. 그동안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지난 4월 27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 한울 사진 김지원

매일노동뉴스 기획좌담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15년 평가와 전망

큰 변화의 삭으로 움틀 날을 기다리며 한 걸음 씩 _____ 이어온 15년

참석자

사회: 연운정 매일노동뉴스 선임기자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조기홍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직업건강환경연구소 실장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변호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이 시작되던
때의 사회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이상윤 산재에 의해 노동자들이 많이 사망했는데도 2000년대 초반에는 사회적 관심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 산재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려면 사망 문제부터 짚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운동을 이끌어갈 조직, 그리고 언론과 함께 한다면 운동이 효과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조기홍 죽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는데도 이를 어떻게 캠페인으로 끌고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던 때가 있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은 실질적인 피해를 당하는 노동단체에서 경각심을 갖고 시작해 매우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1 — 조기홍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실장
 2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3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4 — 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변호사
 5 — 연윤정 매일노동뉴스 선임기자

최명선 — 건설업에서의 산재사망이 특히 심각했다. 건설업에서의 사고가 당연하다는 식의 사회 인식과 현장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운동이 일어나는 게 매우 반가웠다. 건설 노동자의 산재사망 현실을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제정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조기홍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산재사망이 기업에 의한 문제라는 걸 공론화시켰다는 점이다. 그간 산재사망이 줄어든 것 또한 공동 캠페인단의 노력이 이끌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최명선 —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기사화하여 보도하고 있다. 사실 산재사망이 일어나면 본사의 안전관리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대부분 현장 문제로 치부해 왔다. 하지만 제정운동을 통해 산재사망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아직 법 제정 단계까진 가지 못했으나, 지난 15년 동안 제정운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다.



손익찬 중대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가족과 상담을 해보면, 이러한 사고가 여전히 일반적인 형사사건으로 취급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작업자 개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기업들과 싸워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하지만 제정운동과 같은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고, 또 언론과 함께할 수 있었기에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이뤄져 왔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법률적·제도적 변화를 맞이할 때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이상윤 운동을 하면 할수록 어렵다.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문제, 하청의 재하청, 공기 단축 문제 등은 매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있어 기업의 핵심전략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해결이 쉽지 않다.

조기홍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만큼 안전보건관리와 산재사망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부여해야 한다. 이윤만 추구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잘못된 구조는 지양해야 한다.

손익찬 사법부와 검찰은 판례를 중심으로 법을 집행한다.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 법률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적 정서와 거리가 먼 판결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최명선 법과 제도는 점차 바뀌고 있는데 현장은 바뀌지 않는 것이 아쉽다. 현장이 변하려면 현장에서 법을 이행할 주체가 있어야 하고 노동자들이 자기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이 현장에 미쳐야 한다. 산재예방은 기업, 현장, 노동자 모두가 산재예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산재예방에 노동자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다.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최명선 기업의 규모가 크든 작든, 어떤 종류의 산업이든지 간에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비용을 쓰고 인력을 뽑아야 한다. 안전관리보건 체제가 시스템화 되고 법은 지켜야 한다고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더 큰 변화가 시작된다.

조기홍 사업주의 의식을 바꾸려면 기존의 교육 체계로는 어렵다. ‘경기침체와 위기를 핑계로 실상 기업을 위해 완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왔다. 때문에 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경제적 제재, 형사 처분 등이 있어야 한다.

손익찬 안전보건청을 만들고 노동자의 참여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장하는 등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상윤 손익찬 변호사 말에 동감한다. 그동안 산재예방이 사업주와 노동자의 문제라고 생각했지, 국가가 개입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제는 산재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이상윤 입법과 관련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등이 이 법의 취지에 동의하여 운동을 확대해 간다면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손익찬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 객체에 대표이사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기업에는 심각한 불이익을 줘야 바뀌려고 노력할 것이다. 「중대



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이 사회적인 운동으로, 그리고 주체들의 의식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좋은 법이 만들어지고 그에 맞는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최명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결과는 경영최고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분,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고 있는, 고(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을 중심으로 노동자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입법 운동이 일어났으면 한다.

조기홍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산재 사망이 발생하는 부도덕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투자를 하는데 있어 제안을 두는 식의 법 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른 처벌 차등도 고려가 필요하다. 🐦